

2021 - 290

() ()

[4
() ()]

1.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존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이 결정(2020.12.24.)됨에 따라
2. 건축자산진흥구역내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존 한옥밀집지역에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에 적용이 필요한 완화계획 반영을 위해 [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외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] 결정(변경)을 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.
3. 본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2월 4일
서울특별시

I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

가.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 구역

○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4개 구역

순번	관할구	구역명	위치	면적		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1	종로구	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	종로구 돈화문로, 을곡로 주변	147,860	-	147,860	2010.02.25. 서고시 제2010-65호
2	종로구	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	종로구 익선동 156번지 일대	31,121.5	-	31,121.5	2018.05.10. 서고시 제2018-142호
3	종로구	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	종로구 견지동, 관훈동 일대	124,068	-	124,068	2009.12.10. 서고시 제2009-497호
4	종로구	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	경운동, 운니동, 익선동 일대	147,809	-	147,809	2013.06.13. 서고시 제2013-182호
5	종로구	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	경복궁서측 일대 (체부동 외 14개동)	582,297	-	582,297	2016.07.14. 서고시 제2016-201호

나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(안)

▶ 주요변경내용

○ 역사문화적 건축물 및 장소의 보전·활용 결정조서(신설)

구분	구역명	기정		변경	
		적용 지역	계획내용	적용지 역	계획내용
한옥 등 건축자산 보호 및 활용	돈화문로	-	-	지구단위 계획구역	• 한옥 등 건축자산이란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상을 말하며, 본 구역에서는 “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(돈화문로 일대 등 8개 한옥밀집지역)”의 한옥 등 건축자산을 대상으로 한다. •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등 건축자산 보호·활용 시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1조(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)에 근거하여 완화를 적용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“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”(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고시 :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586호(2020.12.24.)),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결정 공고 :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-3502호(2020.12.24.))를 따른다. ※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4조(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) 및 제26조(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)는 별도 적용
	익선				
	인사동				
	운현궁 주변				
	경복궁 서측				

II. 열람기간 :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

III.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기관

- 서울특별시 한옥건축자산과(☎2133-5584)
- 종로구청 건축과(02-2148-2814)

IV. 관계도서 : 생략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